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자자체 조사권한 부여 등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00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조사권한 부여	2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정기적 평가 등	8
※ 참고: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개요 및 구축 현황	11

I. 제안경위

2026년 3월 31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조사권한 부여

개정안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제출이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64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u><신설></u>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u>②</u>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	<u>③</u> ----- ----- ----- ----- -----

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
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생
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

-----, <후단 삭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
른 조사 결과가 제3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제3항-----

-----.

제6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용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③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복구 활동을 통해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시행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지역 내 사업장 현황 및 화학사고 대비 지역역량 강화, 화학물질 누출 사고대응 절차 등 화학물질의 관리와 사고를 대비한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실효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업체 현황과 사업체별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실제 현장 상황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절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주요 내용]

순서	내용	세부내용
1	일반사항	◦ 목적 및 법령 ◦ 적용 대상 지역 및 사업장 현황 ◦ 변경관리 목록
2	사업장 및 중점보호시설 현황	◦ 지역 내 산업단지 현황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목록 및 취급현황 ◦ 화학물질 주요 운송경로 현황 ◦ 사업장 인근의 중점 보호 시설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 누락 진단 및 보완
3	화학사고 대비 지역역량 강화	◦ 비상대응기관과 인력 평가 및 강화 방안 ◦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 예방 노력 평가 및 위험 절감 ◦ 사업장 합동훈련 지원 ◦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 비상대응 발생시 활용자원 평가 및 강화 ◦ 화학사고 대비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
4	화학물질 누출 사고대응 절차	◦ 화학사고의 수준 정의와 대응 ◦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따라야 할 절차 ◦ 지역사회 화학사고 비상대응기관의 임무와 역할 ◦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의 임무와 역할 ◦ 화학사고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 지원
5	화학사고 전파 및 대피 명령	◦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전파 방법 및 대피명령 ◦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 대피소 현황 ◦ 대피소 관리 및 점검계획 ◦ 대피소 이동수단 및 이동지원 계획
6	화학사고 비상대응 장비 및 자원	◦ 지역 내 비상대응 장비 및 책임자 ◦ 사업장 비상대응 장비 및 책임자 ◦ 비상대응 장비 및 자원 활용
7	주민 복귀 및 환경 복구	◦ 주민복귀 결정 ◦ 환경오염 복구 계획
8	붙임자료	◦ 취급사업장 목록 및 화관서 대상 사업장 목록 ◦ 관내 임시 주거시설 목록 ◦ 갑종 보호시설 현황 ◦ 지역내·사업장 비상대응 장비 및 책임자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 상황을 적시에 확인하여 최신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자체장에
게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
련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
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조사결과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시행 가능성
을 높이는 한편, 조사 정보의 불일치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
고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를 지자체장이 중복으로 제
출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자
료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
음.

[화학안전 정보·자료제공 (관계기관→지방정부)]

구분	작성 내용	정보제공(OX)	비고
사업장 및 시설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신규·변경·신고 → 허가증 사본	△ 환경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타법) → 취급시설 개요, 건축물 대장, 평면도 △적합 → 지역사회고지, 비상대응분야 요약, 배치도	○ 안전원
	운반 운송경로	운반계획서 플랫폼화 제공(22년)	○ 운반계획서 실시간x
	취급시설 현황	△신규·변경·신고 → 허가증 사본	○ 환경청
	취급 정보	취급현황 정보	○ 환경청
		유해화학물질	○ 통계정보
		일반화학물질	○ 통계정보
		독성가스	△ 가스공사 자료를 받아 안전원에서 제공
		위험물	○ 지역소방서
	산업단지 현황	-	○ 산단공(누리집) 제공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비상대응기관 인력평가	지방정부 자체	-
	지방정부 사고대응 인력 평가		-
	합동훈련 및 주민교육		-
화학사고 대응	사업장 화학사고 비상연락망	사업장 관리자 번호(일반전화) 제공	○ 환경청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 지원	지방정부 자체	-
화학사고 대피	주민대피 문자(CBS)	주민대피 문자 표준(안) 제공	○ 안전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방정부 자체	- 공공서비스 확인(행안부)
	대피장소 이동수단	지방정부 자체	-
비상대응 장비 확보	지역사회 비상대응 장비	지방정부 자체	- 소방서 등 확인 필요
	사업장 비상대응 장비 동원	-	△ 사업장 보유장비 확보 필요
복구계획	환경복구	지방정부 자체	-

[현행법-개정안-정부의견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정부의견
기후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	○	○	○ 지자체장의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권한 추가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명령	×	○	×
지자체장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	×	○ 대상: 화학물질 취급자	○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유: 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고 받은 경우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정기적 평가 등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5(지역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7조의2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

- 2)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반복되는 화학사고가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주민-기업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소통·협력하여 위험을 사전 발굴하고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2월 기준 226개 지방정부(광역시·자치 제외) 중 158개소(70%)가 화학안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8개소가 해당 지자체 의원·공무원, 시민단체·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규칙³⁾에 근거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음.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개요 및 구축 현황

□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소통·협력하여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지역사회 내 대비 역량을 평가하여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서 가진 역량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여 화학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환경피해 최소화 실현

- (배경) 최근, 반복되는 화학사고는 단순한 사고피해를 넘어 기업에 대한 불신 및 지역사회 불안감*과 갈등 조성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확대

* (보도) 또 터진 화학사고...인근 주민들 불안해 못살겠다(한겨레, '25.7.16.) 등 다수

- (추진경과) 「화관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복구 등 역할 확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화관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16.5.29. 신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 '20.3.31. 개정)

□ 구축 현황

- (형식적) 전국 226개(광역시 제외) 지방정부 중 화학안전 조례 제정(158개소, 70%) 및 위원회 구성(108개소, 46%), 대응계획 수립(220개소, 91%)

<'26.02. 기준>



- (활동적) 전국 243개 지방정부 평가 결과(2023 VS 2024 vs 2025)

<단위: 지방정부 수>

등급(상태)	2023	2024	2025	누적증감
A(안정적 운영)	5(2.1%)	14(5.6%)	19(7.8%)	5 ↑
B(활성화 과정)	34(14%)	48(19.7%)	57(23.5%)	9 ↑
C(준비 과정)	35(14.4%)	28(11.4%)	37(15.2%)	9 ↑
D(비 활성화)	169(69.5%)	153(63%)	130(53.5%)	23 ↓